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의료기관 간 의료급여의 의뢰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 또는 회송하는 의료기관이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에 대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기기 구매와 적합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보청기의 성능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의뢰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회송 시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안 제3조제 6항)

나.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 중계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 3조제7항 및 제8항)

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및 안 제20조제1항)

라. 의료급여의 범위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을 포함(안 제8조제1항)

마. 임신·출산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바.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 기준액을 보청기의 구매, 초기 적합관리(구매 후 1년 이내), 후기 적합관리(구매 후 1년 이후)로 구분 지급(안 별표2)

사.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 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그밖에 의료급여의 의뢰, 회송 및 중계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제3항”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

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

제8조의2 제1항 중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을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구연한(耐久年限)”를 “내구연한(하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의 경우에는 적합관리 유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보청기, 초기 적합관리(보청기의 청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청기 판매자가 보청기를 구매한 사람에 대하여 보청기 구매 후 1년 이내에 제공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및 후기 적합관리(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에 달할 때까지 매년 1회 이상 제공하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를 말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적합관리의 급여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청기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매한 보청기에 대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앞쪽)

지켜야 할 사항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이 의료급여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4.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연장승인 없이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단계별 절차(의원→병원→대학병원)를 거치지 아니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증

이 의료급여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 표지 뒤쪽(1쪽) 주소 참조

190mm×12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세 대 주	
성 명	
생 년 월 일	
구 분	
자격취득일	
보장기관 기 호 및 명 칭	
읍 · 면 · 동 (사회복지시설)	
증 번 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재지) (전화번호)	

의료급여를 받으실 분		
성 명	생년월일	자격 취득일
발급일자 :		

190mm×127mm(보존용지(1종)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생 략)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료급여기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하거나 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의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 또는 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의 의뢰 및 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밖에 의료급여의 의뢰, 회송 및 중계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1(제2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생략)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 (이하 "의료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의료급여 (약제에 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신 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은 의료급여대상에 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급여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것

② (현행과 같음)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의2(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②·③ (생략)

제8조의2(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① -----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

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및 처방된 약

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

용-----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0조(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나 대행 청구단체가 의료급여비용의 심 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 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①----- 제6항--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